

보도시점 2025. 1. 6.(월) 조간
2025. 1. 5.(일) 12:00

배포 2025. 1. 3.(금)

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,510원 지급

- 소비자물가변동률(2.3%) 반영하여 전년 대비 7,700원 인상 -
-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전년(130만 원) 대비 8만 원 인상한 138만 원-

< 장애인연금 급여액 >

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,510원 지급된다.

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「장애인연금법」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.3%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(33만 4,810원) 대비 7,700원 인상된 34만 2,510원으로 결정되었다.

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(1월 20일)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,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2,510원을 받게 된다.

※ 장애인연금 급여: 기초급여(342,510원) + 부가급여(전년 동, 소득계층에 따라 30,000~90,000원)

* 기초급여 :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

** 부가급여 :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

<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>

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, 2025년 선정기준액*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,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다.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30만 원, 부부가구 208만 원)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, 부부가구는 12만 8천 원 인상된 금액이다.

* 선정기준액 결정 : 「장애인연금법」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%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·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하여 결정

<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>

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대상자 기준,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 없이 129)로 문의하면 된다.

한편,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급여액 기준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최대 43만 2,510원의 장애인연금을,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. 18세 미만 중증·경증 장애아동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.

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“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장애인연금 개요

담당 부서	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	책임자	과 장	김민정 (044-202-3320)
		담당자	사무관	이에진 (044-202-3321)



□ 사업목적

-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,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(「장애인연금법」 제1조)

□ 대상자 [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]

- (중증장애인) 「장애인연금법」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*인 사람

* 종전 장애등급상 1급·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

- (선정기준액*) '25년 단독가구 138만 원, 부부가구 220.8만 원 이하

*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%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·고시(제4조)

□ 장애인연금 급여 [기초급여 + 부가급여]

- (기초급여*)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

*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을 반영하여 매년 결정·고시(제6조)

- (부가급여)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

(‘25년 기준)

구분	18 ~ 64세			65세 이상		
	기초급여*	부가급여	합계	기초급여	부가급여	합계
생계·의료급여수급자(재가)	342,510원	90,000원	432,510원	기초연금 으로 전환	432,510원**	432,510원
생계·의료급여수급자(시설)	342,510원	-	342,510원		-	-
주거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	342,510원	80,000원	422,510원		80,000원	80,000원
차상위초과	342,510원	30,000원	372,510원		50,000원	50,000원

*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(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,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% 감액)

**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

□ 수급자 현황 : 35만 1,386명 [수급률 70.2%, '24.11월 기준]